경쟁제한적 기업결합규제

이 병 주
공정위 총괄정책과장

1. 기업결합규제의 의의

기업결합은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임원의 겸임, 합병 등 결합수단에 의하여 개별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됨으로써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통합되는 기업간의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을 의미한다. 기업결합은 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이 향상되고 소비자후생이 증진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지만, 그로 인해 시장구조를 비경쟁적인 구조로 만들어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각국에서는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일정한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은 제3장에서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결합 규제조항을 두고 있다.

2. 우리 나라 기업결합 규제제도

▣ 규제대상의 범위 및 유형

공정거래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강요 또는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동일인), 동일인의 관련자[1],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한 자(영 제12조).

공정거래법 제7조에서는 규제대상의 기업결합으로서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새로운

1) 동일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계열회사의 임원 등을 말한다(시행령 제3조제1호).

회사설립에의 참여 등 다섯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2] 다만, 대규모회사 이외의 임원겸임이나 1개 회사 또는 기업집단 단독의 새로운 회사설립이나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기업결합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법 제7조제1항).[3]

▣ 기업결합의 신고

이상의 다섯 가지 유형의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와 합산한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다.[4] 그러나 유형에 따라 그 신고의 시점이 다르다. 기업결합은 사후신고가 원칙으로서 당해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 그러나, 대규모회사의 경우에는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의 유형에 대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한다.[5] 이 경우 대규모회사는 신고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각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규모회사의 이러한 기업결합행위는 강한 기업결합으로서 일단 성립되면 원상회복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 지배관계 형성여부의 판단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나, 주식취득, 임원겸임, 회사신설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이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는지 여부를 먼저 심사해야 한다.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따르면, 주식취득의 경우 주식소유비율이 50% 이

---

2) 주식취득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기업결합의 수단중 가장 흔히 이용되는 방법이다. 임원겸임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해 회사의 임원을 겸임시키거나 파견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은 두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영업양수는 기업간 협약에 따라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영업 또는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는 Jonit Venture를 의미한다.

3) 법 제7조1항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 분할·분할합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4)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와 합산한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동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의 100분의 20(상장법인은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이때, 주식소유비율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산)
2.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대규모회사에 국한)
3. 합병 또는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
4. 새로 설립되는 회사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5) 대규모회사의 합병, 영업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에는 각각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회사신설에 대한 주총의결일(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반면, 대규모회사 이외의 합병, 영업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는 각각 합병등기일,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한 날, 또는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일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상이거나, 주식소유비율이 50% 미만이더라도 주식소유비율이 1위에 해당하고 주식분산도로 보아 주주권행사에 의한 회사지배가 가능한 경우 등에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원겸임의 경우 임원 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겸임하는 경우 등에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회사신설에의 참여의 경우에는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 경쟁제한여부 판단

신고된 기업결합이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판단되면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7조제1항에서는 기업결합의 제한기준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적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두 단계를 거친다. 먼저,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을 획정해야 한다. 경쟁제한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이 일어나는 장으로서 시장의 범위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상품시장), 거래지역(지역시장),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기업결합심사지침에 따르면 상품시장은 거래되는 특정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특정상품이 동일한 시장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의 유사성, 구매자나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관련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지역시장은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의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를 말한다. 특정지역이 동일한 시장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운송가능성, 구매자나 판매자의 구매·판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일정한 거래분야는 제조, 도매, 소매 또는 특수한 거래단계 등 거래단계별로 획정될 수 있다.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기업결합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기업결합은 그 형태를 기준으로 볼 때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으로 나눌 수 있다.[6] 특히, 이중에서도 수평결합은 경쟁사업자간 결합으로서 당해 합병에 의해 경쟁단위가 감소하고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경쟁에 대한 영향이 가장 직접적이 된다.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

6) 수평결합이라 함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을 말하며, 수직결합은 상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여러 단계 중 인접한 단계에 있는 사업자, 즉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기업결합을 의미하고, 혼합결합은 경쟁관계가 없는 이업종 사업자간의 결합으로서 수평이나 수직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 경쟁제한성의 추정

공정거래법은 경쟁제한성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쟁제한성 추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업결합의 당사회사(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 합산)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에 해당하거나, 대규모회사[7]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 이상인 거래분야에서 당해 기업결합으로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법 제7조제4항). 그러나 기업결합이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경쟁제한성이 없음을 반증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 기업결합 예외인정 기준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이에 해당함을 입증할 때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이거나,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적용이 제외된다.[8]

3. 외국의 사례

일반적으로 기업결합규제는 국내시장규모가 큰 경제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미국과 독일에서 강력히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클레이튼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거나 독점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는 기업결합은 금지된다. 기업결합 규제업무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성 독점금지국(DOJ)이 경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두 기관 모두 기업결합 심사업무에 조직자원의 3분의 2 이상을 투입하고 있을 정도로 기업결합규제는 매우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경쟁정책 동향을 보면, 미국 영토 밖에서 행해진 외국기업의 행위라도 미국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자국 경쟁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점이 특징적인 모습이다. 이는 기업결합심사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97년 FTC는 독일의 엔진부품업체인 Mahle GmbH가 브라질 경쟁사인 Metal Level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사전합병

7) 계열회사 전체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영 제12조의2)

8) 개정 시행령(안) 제12조의3(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등의 자산이 시장에서 퇴출하게 되는 경우
2.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승인을 지연한 사건에 대하여 양 기업에 대해 5백만불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Metal Level의 미국 현지법인을 매각토록 명령한 바 있다.

독일의 경우 기업결합규제가 시행된 것은 경쟁제한금지법이 2차 개정된 1973년부터이다. 1957년의 경쟁제한금지법 제정시에는 기업결합 신고조항 이외에는 달리 이를 규제하는 조항이 채택되지 않았다. 이는 전후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기업결합규제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와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3년 도입된 이래 기업결합규제제도는 독일의 경쟁정책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결합규제의 핵심조항은 경쟁제한금지법 제24조이다. 동 조항은 기업결합에 의해 시장지배적 지위가 형성되거나 강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조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이런 개선이 시장지배의 폐해를 능가한다는 것을 참가기업들이 입증하지 않는 한 이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독점금지법은 사적독점의 형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합병과 영업양수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규제는 근래에 와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독점금지법 제15조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합병과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한 합병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6조는 영업의 양수 등에 대하여 제1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은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원상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결합규제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출액이나 자산가치 등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을 경쟁당국에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4. 사례로 본 기업결합규제

▣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사례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내용을 보면, 신고의무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례부터 살펴보자. 대규모회사인 동서유리공업(주)는 '98.3.16일 신화인쇄(주) 및 (주)세진에스피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98.6.10일 기업결합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대규모회사가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서유리공업(주)는 86일이 경과한 후 기업결합신고를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사후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대호는 다른 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주식취득 후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서울케이블티브이(주)와 (주)한국케이블티브이동작방송의 주식을 취득한 후 각각 132일, 91일이 경과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으로 경고조치하였다.

▣ 기업결합 금지사례 : 동양나이론(주)의 한국카프로락탐(주)의 주식취득 건[9]

나이론제조업자인 동양나이론(주)가 임직원 등을 통하여 나이론 원료인 카프로락탐의 국내 독점 생산업체인 한국카프로락탐(주)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여 그 지분율이 30.14%에 이르자 한국카프로락탐(주)의 다른 대주주들이 이와 같은 주식취득은 경쟁제한적인 것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이다. 문제가 된 카프로락탐의 국내시장 현황을 보면, 한국카프로락탐(주)가 34%를 공급, 나머지 66%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한국카프로락탐(주)는 나이론 제조업자인 동양나이론(주), (주)코오롱, 고려합섬(주) 3개사가 각각 20.4%, 18.4%, 7.1%의 지분을 차지하고 특정회사에 의한 경영권 지배를 상호견제하면서 카프로락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왔었다. 한편, 나이론제품의 국내시장구조는 동양나이론(주) 48%, (주)코오롱 21%, 고려합섬(주) 17%, 태광산업(주) 13%를 차지하는 4개사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먼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동양나이론(주)와 한국카프로락탐(주)는 실질적으로 계열관계에 있음이 인정되고 실제 동양나이론(주)가 한국카프로락탐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선임권을 행사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양사간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동양나이론(주)가 한국카프로락탐(주)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금지하였다.[10] '88년 이후 동양나이론(주)는 경쟁사에 비해 생산규모를 크게 증대시켜 수입 카프로락탐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온 상황에서 동양나이론(주)가 카프로락탐의 배정비율, 가격 등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다른 경쟁사업자는 카프로락탐의 구매선을 일시에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산 카프로락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타 경쟁사업자들의 원료확보에 애로가 예상되는 등 나이론제품의 원료시장의 경쟁이 제한되고, 또한 동양나이론(주)는 나이론 시장에서 48%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카프로락탐의 원가비중이 55~60%인 점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 나이론 시장에서의 경쟁도 제한될 수 있다.

▣ 일부 매각명령 : P&G GmbH의 쌍용제지(주) 주식취득에 대한 건[11]

Procter & Gamble GmbH(미국 P&G company 계열회사인 독일회사)가 쌍용그룹으로부터 직접 또는 증권시장에서 공개매수의 방법을 통하여 쌍용제지(주)의 발행주식총수의 91.6%를 취득하고 '97.1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피취득회사인 쌍용제지(주)는 종이생리대, 종이기저귀, 화장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며, 종이생리대와 종이기저귀를 생산하여 쌍용제지(주)에 독점 공급하는 쌍용유니참(주)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한편, P&G GmbH의 계열회사인 한국피앤지

9)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6-51호, 1996. 4. 22.
10) 동양나이론(주)는 본건 관련 조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모두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므로 본건 행위와 관련 별도의 주식처분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1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8-84호, 1998. 5. 23.

(주)는 종이생리대, 샴푸, 비누 등을 생산·판매해 오고 있었다. 본건 결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종이생리대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문제삼았다.[12] 종이생리대 국내시장현황을 보면, '96년 현재 한국피앤지(주) 47.3%, 유한킴벌리(주) 20.7%, 쌍용제지(주)[13] 16.5%, 대한펄프(주) 13.1%, 기타 1.3%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건 기업결합이 성립되면 P&G의 시장점유율이 47.3%에서 63.8%가 되고 2위와의 격차도 P&G의 시장점유율의 25% 이상으로서 법 제7조 제4항제1호의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시장집중지수인 HHI(Hirshman-Herfindal Index)[14]가 3,158포인트에서 4,719포인트로 1,561포인트나 증가하여 시장지배력의 행사가 더욱 용이해지는 점, 그리고 종이생리대 시장은 생산 초기에 많은 자본투자와 높은 기술이 요구되고 독자적인 유통망 구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곤란한 점, 그리고 종이생리대 해외수입비중(0.3%)도 작아 시장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고 조만간 해외수입의 급격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본건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P&G GmbH에 대하여 쌍용제지(주)의 종이생리대 영업과 관련된 기계설비 일체 및 쌍용유니참(주)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명령하였다.

▣ 영업방식제한 : 질레트컴퍼니의 (주)로케트코리아 주식취득 건[15]

미국의 질레트사는 (주)로케트전기의 1차전지영업을 양수한 (주)로케트코리아의 주식을 100% 취득하고 신고하였다. (주)로케트코리아는 (주)로케트전기가 질레트사에 매각하기 위해 신설한 회사로서 (주)로케트전기가 소유하고 있는 1차전지 "로케트" 상표권 및 (주)로케트상사의 판매관련 자산을 양수한 회사이다. 한편, 질레트사의 특수관계인인 질레트코리아(주)는 국내에서 전지류·면도기 등을 판매해 오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건 결합에서의 관련시장을 「1차전지의 망간·알카 및 2차전지의 니카드(소비자용)·알카바」를 포함하는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전지는 충전 여부에 따라 충전이 안 되는 1차전지와 충전이 가능한 2차전지로 구분되나, 상품의 용도·특성이 유사하여 상호대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일 시장으로 획정한 것이다. 국내전지시장을 보면, '97년 현재 질레트코리아 34.3%, 로케트전기 31.9%(양도분은 24.6%), 에너자이저코리아 16.3%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건 결합이 성립되면 질레트사의 시장점유율이 58.9%가 되고 2위와의 격차가 42.6%로 질레트사 시장점유율의 25%를 넘어서고 있어 법 제7조제4항제1호의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되며, 시장집중지수인 HHI가 2,481포인트에서 3,809포인트로 1,328포인트 증

12) 쌍용제지(주)와 쌍용유니참(주)가 제조·판매하는 종이생리대 이외의 종이기저귀, 화장지 등은 경쟁정책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3) 쌍용제지(주) 6.5% + 쌍용유니참(주) 10.0% = 16.5%

14) HHI = Σ(각 사의 시장점유율) 2. 참고로 미국 FTC와 DOJ의 수평합병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기업결합후 HHI가 1,800이 되는 고집중시장에서 당해 결합으로 HHI가 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력을 형성 강화하거나 시장지배력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15)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8-282호, 1998. 12. 8.

가하여 시장지배력의 행사가 더욱 용이해지고, 그리고 유통망 구축 및 초기 자본투자비용 등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질레트사에 대하여 (주)로케트코리아를 통해 로케트 알카전지를 판매함에 있어서 1999.1.1.부터 2003.12.31.까지 (주)로케트코리아가 1차 도매상에 대하여 공급하는 연평균 가격이 듀라셀 알카전지의 미국내 연평균 소비자가격의 27.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본건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하여 주식매각, 영업양도 같은 직접적인 금지방식 대신에 일정 기간 동안 가격변경금지 등 영업방식과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정명령을 한 첫번째 사례이다. 공정

돋보상식

재벌 財閥

재벌(Chaebol, Conglomerate)의 개념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보다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통상 재벌은 특정인 또는 그 친인척에 소유가 집중되어 있으며,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직접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하나의 기업집단을 의미함. 우리나라 재벌의 특징은, ① 여러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② 그 구성기업들 중에는 당해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며, ③ 그 기업집단은 소유주 개인이나, 그 가족 또는 혈족에 의해 사실상 지배되고, ④ 초기의 성장이 정부의 보호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이 많음. 우리 나라의 재벌은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본집적(資本集積)과 기술개발을 통해 국민경제의 성장·발전에 기여한 면이 크나 과도한 국민경제상의 비중, 정부의존적인 성장과정, 비합리적인 경영방식, 시장의 독과점화, 부동산투기, 환경오염 등의 비판도 받고 있음. 공정거래법은 재벌들의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총액순위 1위부터 30위까지의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상호출자, 출자총액 및 채무보증금지 등의 규제를 하고 있음.